NASC News Letter

Volume. 09

www.nasc.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공지사항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News Letter
Volume. 09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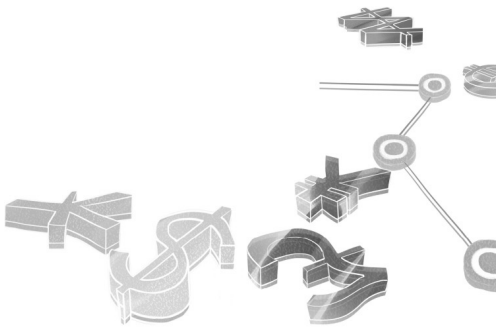

목차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공지사항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01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유 동 훈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자산팀
Tel_02.3149.7556 / e-mail_blacksky21@kicpa.or.kr

01 캐나다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번역자료집 발간(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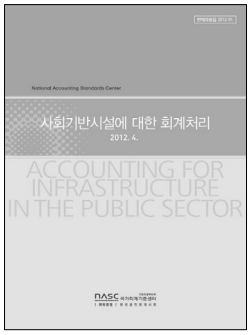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 CICA)에서 연구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원제: Accounting For Infrastructure in the Public Sector)를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본 발간물은 사회기반시설의 유형과 특징,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이유와 목적,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측정방법, 사회기반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 등을 연구한 자료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수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이 제정되었다.

02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해외사례 조사 연구자료집 발간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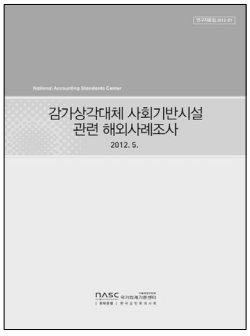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2항에서는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접근법(Modified Approach)'이라 명명된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미국지방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수정접근법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계상하고 수정접근법을 적용했거나 적용하고 있는 미국지방정부 22개 주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연구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수정접근법 적용 요건, 적용 대상 자산의 종류, 수정접근법 도입을 위한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03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회람서 번역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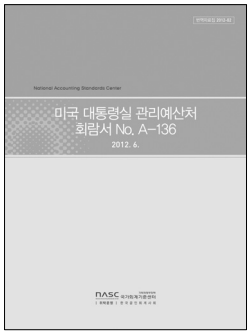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미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회람서 A-136 "재무보고규정"(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OMB Circular No. A-136)을 번역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금번 2011년 회람서는 동일한 제목의 2010년 OMB 회람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미국 정부기관 및 부처의 재무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본 회람서는 총 5부로 구성되는데, I부는 본 회람서의 개요 등 일반정보를 제공하며, II부는 성과 및 회계책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s, PAR) 및 기관재무보고서(Agency Financial Report, AFR)의 형식과 내용을 정의하고, III부는 성과 및 재무정보 요약서(Summary of Performance and Financial Information)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IV부는 분기 재무제표 및 차이분석보고서에 대한 지침, V부는 미국정부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무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회람서의 영문원본은 총 178페이지의 분량이며, 번역자료집 발간 이후 각 대학교 도서관, 정부 각 부처 자료실 및 국회의원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04 공적연금회계처리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연구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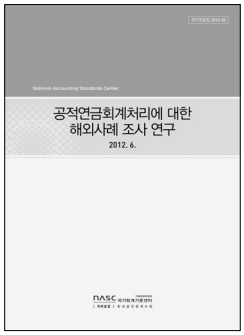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연금회계준칙 제정 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 도입한 선진국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및 평가방식에 대해 조사·연구한바 있으며, 금번 이에 대한 연구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평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연금회계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연금회계준칙 제정시 본 연구자료가 활용되었으며, 그결과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범위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방식은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험수리적 방식과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자료집은 각 부처 자료실 및 주요대학 도서관, 국회의원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05 2012 상반기 재무결산 관리자 전문교육 실시(6.28~29)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012 상반기 재무결산 관리자 전문교육」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재무결산 교육이 주로 실무자 위주(7급 이하)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재무결산 관리자 전문교육에는 중앙부처 및 일선관서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문교육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각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재무결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요 쟁점 및 향후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회계법령 및 지침 개정 소요, dBrain 개선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및 각 부처, 국가회계기준센터 등 재무결산 담당자간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06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지원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적용한 국가통합재무제표가 올해 5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재무제표 결산지원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12월말부터 결산T/F 운영을 통해 부처별 결산보고서 작성업무를 지원하였다.
2012년 2월 29일 각 중앙관서 재무결산보고서가 기획재정부에 모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국가회계기준센터 결산T/F는 국가통합재무제표가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제거 등 국가통합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는 감사원 검사결과를 반영한 국가통합재무제표의 5월 국회 제출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07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 개편(7.1)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앞으로 수행 업무가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7월 1일부로 기존의 총괄팀장 및 3팀체제(국가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에서 2부 7팀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2부 7팀은 재무통계부(결산팀, 통계팀(GFS팀), 공공기관팀)와 평가분석부(원가팀, 자산팀, 부채팀) 및 행정팀으로 구성된다.
금번 조직 개편은 2011회계연도 국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12.5.31)함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 관련 업무와 2012회계연도 대비 지침 제·개정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연구원별 업무분장 및 책임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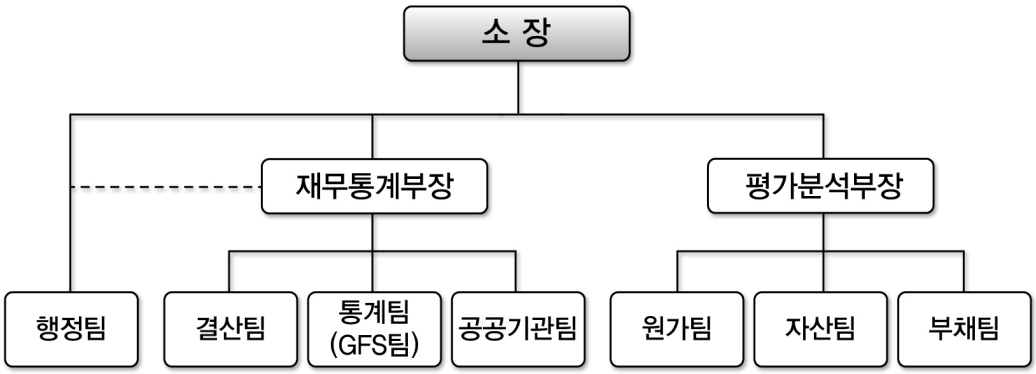

08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신규 채용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지난 5월 정부회계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 4명을 선발하여 6월 1일부터 업무에 투입하였다.
이번 신규 채용에는 국내 및 해외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니고 회계법인 및 관련기관 등에서 수년간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대거 지원하여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신규 채용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에는 특히 관련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정부회계분야에 대한 남다른 도전정신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채용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소장 등 연구원 20명, 행정인력 2명 등 총 23명의 인력으로 운용된다.

09 중앙부처 실시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 교육 강사 지원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을 지원하였다.
지난 6월 21일에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최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정부회계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결산 관점의 dBrain 업무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2일, 25일에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회계기준 및 각 회계처리지침에 대해 강의하면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재무제표 작성 방법, 각 유형별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25~27일에는 병무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무결산과정」에 참여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 연계'를 주제로 강의를 지원하였다.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부처의 교육요청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02 NASC

진 태 호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결산팀
Tel_02.3149.7552 / e-mail_ redsplit@kicpa.or.kr

01 2011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5.1)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30일 '2011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통해 "27개 공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은 12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13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 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공공요금의 제한적 인상 등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27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49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조6000억원(8.4%) 증가했다. 총부채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5000억원(12.9%) 늘었다.

이번 결산은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회사의 자산·부채·손익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로 작성됐다.

재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공기업 결산서를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오는 7월말까지 회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끝난 공기업 결산보고서는 국무회의 보고 후, 오는 8월 20일 국회에 제출된다.

02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5.31)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한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번에 처음 작성된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유동자산 263조원, 투자자산 483조원, 일반유형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 기타 9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이번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그 가치가 처음으로 평가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자산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중앙정부도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국가 전체 자산·부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국가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03 NASC

이 혜 진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공공기관팀
Tel_ 02.3149.7566 / e-mail_ whateverhj@kicpa.or.kr

01 IPSASB, 공개초안 47호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 발표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공개초안 7호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Financial Statement Discussion and Analysis)"를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안으로 제시된 동 공개초안은 회계실체가 각 실체의 특수상황을 반영하는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를 작성 및 발간할 때 유연성을 충분히 갖는 동시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와 각 실체의 재무제표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공개초안 4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에 관한 지침서를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으로 발간하며, 동 지침서는 발생주의 기반 재무제표를 규정한 IPSAS와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를 각 실체의 재무제표와 함께 작성하고 제시한다.
- 재무제표 작성에 요구되는 정성적(qualitative) 기준을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에도 적용한다.

공개초안 47호는 재무제표분석 및 검토를 작성하는 실체가 동 초안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행지침과 참고사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안드레아 버그먼 IPSASB 위원장은 "재무제표검토 및 분석의 목적은 회계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각 실체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독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제표검토 및 분석은 심도 있는 이해와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주의 기반 재무제표를 보충하고 보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02 GASB, 기준서 제65호 및 제66호 발표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관한 중요 실무사안을 다루는 기준서 제65호와 제66호를 발표했다. 기준서 제65호 "과거에 자산과 부채로 보고된 항목(Items Previously Reported as Assets and Liabilities)"은 자원의 이연 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보고방법을 명확화하여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준서 제66호 "2012년 실무적 수정(Technical Corrections—2012)"은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회계보고기준과 재무보고기준간 상충을 해결함으로써 재무보고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준서 제65호

GASB 개념서 제4호 "재무제표의 구성요소(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는 GASB의 권위있는 발표에서 특별히 정한 상황에서만 이연 유출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자산 및 부채로 보고된 금액 중 어떠한 잔액이 개념서 제4호에 따른 실제 자원의 이연 유출입으로 기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준서 제65호는 제4호의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자산 및 부채로 보고된 항목 중 자원의 이연 유출입으로 기록될 특정항목을 재분류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산 및 부채로 보고된 항목 중 자원의 유출입으로 기록될 특정항목 또한 정하고 있다.

○ 기준서 제66호

기준서 제66호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리스크 파이낸싱 활동에 대한 기금 중심 보고를 일반기금과 내부서비스기금 유형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준서 제10호 "리스크 파이낸싱 및 관련 보험 이슈에 대한 회계 및 재무 보고(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Risk Financing and Related Insurance Issues)"를 개정한다. 그 결과 정부는 리스크 파이낸싱 활동에 사용되는 정부기금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서 제54호 "기금 잔액 보고 및 정부 기금 유형 정의(Fund Balance Reporting and Governmental Fund Type Definitions)"에서 제시한 정의를 참고하게 된다.

또한 제66호는 기준서 제62호 "1989년 11월 30일 이전 FASB 및 AICPA 발표문에 포함된 회계 및 재무보고지침의 체계화(Codification of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Guidance Contained in Pre-November 30, 1989 FASB and AICPA Pronouncements)"를 개정하면서 다음 사항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지침을 변경한다: (1) 정액법과 차이가 있는 운용리스 지급, (2) 매입부채 혹은 매입부채 그룹의 초기투자금(구입가격)과 원금금액의 차이, (3) 모기지대출 매도시 서비스 수수료율이 당시의 통상적인 서비스수수료율과 현저히 다른 경우, 해당 서비스수수료율. 제66호에 의한 변경으로 인해 기준서 제13호 "임대료 인상이 예정된 운용리스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Operating Leases with Scheduled Rent Increases)"의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기준

서 제48호 “미수채권 및 미래수익의 판매 및 담보, 자산 및 미래수익의 내부이전(Sales and Pledges of Receivables and Future Revenues and Intra-Entity Transfers of Assets and Future Revenues)”에 부합하는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두 기준서 조항은 2012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03 FASAB, 이연 유지보수 보고 기준 개정

톰 앨런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위원장은 FASAB가 연방재무회계기준(SFFAS) 제6호, 제14호, 제29호, 제32호를 개정하는 SFFAS 제42호 “이연 유지보수(Deferred Maintenance and Repairs, Amending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6, 14, 29 and 32)”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SFFAS 제42호는 FASAB가 이연 유지보수의 측정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 및 전문업계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내놓은 가장 최근의 결과물이다. FASAB는 가능하다면 감사원이 특히 부동산의 유지보수 누계상황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제42호를 통해 변경된 보고실체의 의무사항은 (1) 실체의 유지보수정책 및 유지보수활동의 우선순위를 밝힐 것, (2) 수용 가능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했는지 명시할 것, (3) 이연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일반유형자산(PP&E) 및 수탁유형자산을 명시할 것, (4) 일반유형자산 분류별로 이연 유지보수 잔액을 제시할 것, (5) 전기대비 유의미한 변동사항을 설명할 것이다.

앨런 위원장은 “민관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이번 기준을 이행하면 이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이번 기준은 각 기관의 고유한 상황을 존중하는 기관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연관성 있으며,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04 FASAB, SFFAS 제43호 "용도지정 징수액" 발표

톰 앨런 FASAB 위원장은 FASAB가 SFFAS 제43호 "용도지정 징수액: 개정 제27호 특정기금의 식별 및 보고 개정(Dedicated Collections: Amending SFFAS 27, "Identifying and Reporting Earmarked Funds.")"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앨런 위원장에 따르면 "SFFAS 제43호는 용도지정 징수액(사회보험세 및 메디케어보험료 등 특정목적을 위해 거두는 징수액)에 대한 보고를 개선할 것이다. 제43호는 보고서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용도지정 징수액에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던 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정 징수액을 연결보고가 아닌 통합보고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한다."

제43호에 의해 개정된 제27호 특정기금의 식별 및 보고는 다음과 같다.

- "특정기금"이라는 용어를 "용도지정 징수액"으로 변경
- 용도지정 징수액으로 조성된 기금의 정의를 변경
  - 연방정부 외부에서 조달된 기금원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진 기금만이 용도지정 징수액으로 조성된 기금의 조건을 충족함을 명시
  - 연방공무원(민간공무원 및 군인)에 제공되는 연금, 기타퇴직급여, 기타퇴직후급여 및 기타급여를 위해 마련된 기금을 제외함을 명시
- 용도지정 징수액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해 제시하는 연결 데이터 혹은 통합 데이터를 모두 허용
- 기관의 특정 구성실체가 순포지션변동보고서와 관련된 용도지정 징수액을 보고할 때 재무제표본문 보다 주석에 표시할 것을 허용

04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윤 성 호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결산팀

Tel_02.3149.7562 / e-mail_ shyoon80@kicpa.or.kr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1]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날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 세입세출결산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 포함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도 기업부문의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나 이루어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정부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국가재무제표 작성 내용들이 소개 된 바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국가재무제표 제출 과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고,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는 「국가회계법」이다. 2007년 10월 17일에 공포된 이 법은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가재정법」과 결산 및 회계규정이 혼재되어 있었고, 결산보고서 작성 주체 및 결산보고서 구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13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로 구성하였으며,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분은 「국가회계법」에,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회계의 결산에 관한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충분한 시범 운용을 위해 종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 및 국회제출을 해왔던 기금 및 책임·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감사원 및 국회제출을 「국가재정법」부칙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시로 연기하였다.

1) 국가결산,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등의 결산보고서

이후 2009년 3월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원가계산 준칙, 재정상태표 회계처리지침 등 세부 회계처리를 규정한 준칙 및 지침을 제정해 왔다. 이러한 기준 제정 작업은 2010년 7월 26일 국가회계기준센터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 및 위탁 운영되면서 한층 속도를 내게 되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연금, 보증·보험회계준칙 등 3개 준칙 제정 및 융자회계처리지침 외 15개 지침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자산재평가 작업 지원과 '10 ~ '11회계연도 국가회계 결산을 지원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11회계연도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완성도 높게 작성하기 위해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11년 하반기에 수행한 중간결산 검토, 국가회계 교육지원 및 실무지침서 작성, 결산 시 중앙관서 현장점검 수행 및 기금·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검토 및 질의응답 수행 및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작업에 참여 등이 있다.

중간결산 검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11회계연도 재무결산 이전에 오류를 사전에 파악 수정하여 최초로 국회 제출될 재무제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간결산검토는 2011년 9월 22일에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결산 검토 설명회를 시작으로 회계·기금 자체 검토 및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검토 작업으로 이어졌다. 중간결산 검토는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을 대비하여 내부거래 관련 거래처 입력 오류 검토, 계정과목 명세서에 부의 거래처 검토, 감가상각 기본정보 입력 여부 검토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 외에도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를 도와 국가회계 교육을 지원하고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특히 회계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해설서", "업무매뉴얼", "재무결산 오류사례집"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배포되었다.

2012년, 연초부터 기금·기업특별회계 결산을 시작으로 국가재무제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09, '10회계연도에 이어 '11회계연도에도 공인회계사를 모집하여 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한 후 각 부처에 지원해 주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회계결산지원단과 협업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결산 T/F를 구성하여 중앙관서 결산 현장점검 수행 및 기금·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검토 및 질의응답을 수행하였다. 특히 국가회계기준센터 결산팀을 주축으로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작업에 참여하여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기일에 맞춰 제출[2]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감사원 제출('12.4.10)

감사원에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는 민간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감사가 수행되었는데, '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정부회계가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변경되었지만 감사원 인력으로는 이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 회계법인을 보조자로 활용한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통합은 물론 7개 분류로 나눈 45개 중앙부처에 대한 검사업무에 7개 회계법인을 참여시켰으며, 240명이 넘는 회계사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을 거쳐 5월 20일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기획재정부에 접수되었으며, 5월 31일에 국회 제출하게 되었다.

재무제표 작성 결과 자산은 총 1,523조원, 부채는 총 774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조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자 산	1,523.2	부 채	773.6
유 동 자 산	263.5	유 동 부 채	82.1
투 자 자 산	483.0	장기차입부채	294.8
		장기충당부채	374.8
일반유형자산	492.9	기타비유동부채	21.9
사회기반시설	274.5	순 자 산	749.6
무 형 자 산	1.0	기 본 순 자 산	442.8
		적립금및잉여금	336.5
기타비유동자산	8.3	순 자 산 조 정	(29.7)

자산을 살펴보면 종전에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물품 등 이외에도 사회기반시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자산실사, 자산재평가 등을 거쳐 정부의 모든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총 1,52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도로 · 공항 ·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금번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그 가치를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부채는 그동안 전통적 방식에 의해 국가채무로 인식해온 국채, 차입금 이외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모든 부채가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총 77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부채는 유동부채 82조원, 장기차입부채 295조원, 기타비유동부채 22조원, 장기충당부채 375조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장기충당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現 재직자에게 평생 동안 지급될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3]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금년에 처음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과거에 없던 부채를 새롭게 인식한 것은 아니다.

3) 충당부채 산출시 적용하는 가정으로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이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동일한 방식으로 '07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를 시산한 결과 251조원으로 나타나, '07년 251조원(GDP 대비 25.7%)에서, '11년 342조원(GDP 대비 27.6%)으로 상승하였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11년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GDP 대비 28%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주요국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

(단위 : GDP 대비, %)

한국('11년)	미국('10년)	영국('10년)	독일('06년)	프랑스('06년)
28	39	77	41	50

* 자료 : 한국·미국·영국은 각국 재무결산서, 독일·프랑스는 「Final Report of the Eurostat/ECB Task Force on the statistical measurement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pension schemes in general government to the CMFB(Committee on Monetary, Financial and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08.1월)에 근거

이 외에도 재무제표 계상에 따라 산출된 재무정보 중 몇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11회계연도 결산결과 물품[4] 중 장부가액 기준(취득금액 – 감가상각비)으로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으로 파악되었으며, 취득금액은 424억원으로 취득 후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기말 금액은 350억원이다. 이는 조달청을 통해 금융리스형태로 취득하였으며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3호기 CRAY XE6 "해온"〉

〈슈퍼컴퓨터 3호기 CRAY XE6 "해담"〉

4)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물품관리법 제2조)

한편, 이 장비는 '10년 12월에 도입하였으며 국내 최대 규모로 '11년 기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31위와, 3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기상청은 해온, 해담 시스템을 활용, 전 지구를 가로×세로 25km 단위로 한반도는 1.5km 간격의 격자로 세분화하여 상세 기상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다음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장비는 국립대구과학관 전시품 82억원, 문화재보호기금 보안용카메라 69억원, 금오공대 프로그램테스트 S/W 69억원, 산대학교 진동시험기 67억원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국유재산 중 가장 건설비가 많이 투입된 교량은 어디일까?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교량 중 가장 비싼 교량은 '인천대교'로 확인되었다. '11년말 기준 인천대교 가액은 1조 2,44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은 교량 가액 순위이다.

〈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가액 순위 〉

(단위 : 억원)

순 위	교 량 명	가 액	비 고
1	인천대교	12,440	인천광역시 연수구
2	영종대교	7,676	인천광역시 중구
3	서해대교	6,705	충청남도 당진군
4	부천고가교	4,329	인천광역시 남동구
5	마창대교	1,425	경상남도 창원시

※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을 대상으로 확인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은 제외

이와 같은 교량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재무제표 작성 이전에는 결산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았던 자산으로서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국가자산을 빠짐없이 보고하게 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교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대장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국가가 인식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가장 재산가액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중 취득가액 기준으로 가장 재산가액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dBrain시스템[5]으로 확인되었으며, '11년말 기준 dBrain시스템 가액은 353억원이다.

5) 예산과 결산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무형자산 재산가액 순위 〉

(단위 : 억원)

순 위	무형자산	가 액	소관회계
1	dBrain시스템	353	기획재정부
2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299	국세청
3	G2B시스템	172	조달청
4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	150	환경개선특별회계
5	주중국대사관 관저부지 사용권	124	외교부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유형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형자산 상각을 위해 취득원가, 취득시기, 내용연수를 dBrain 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무형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자산이 가장 많은 부처와 부채가 가장 많은 부처는 어디일까? 자산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해양부로 542조 7,43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자산은 사회기반시설[6] 272조원, 일반유형자산 151조원, 투자자산 1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산 순위 】

(단위 : 억원)

순 위	부 처 명	자산 가액
1	국토해양부	5,427,437
2	보건복지부	3,526,670
3	기획재정부	2,982,442
4	국방부	1,500,500
5	농림수산식품부	732,471

부채가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서 359조 8,714억원이며, 기획재정부의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310조원, 유동부채 50조원[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국토해양부는 사회기반시설(8종) 중 어항을 제외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7종의 국가귀속 사회기반시설을 관리

7) 장기차입부채와 유동부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발행한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이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성

【 부채 순위 】

(단위 : 억원)

순 위	부 처 명	부채 가액
1	기획재정부	3,598,714
2	행정안전부	3,213,896
3	금융위원회	794,413
4	국토해양부	784,271
5	국 방 부	569,842

이처럼 우리나라도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국가 전체 자산·부채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유재산으로 관리·보고 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자산 등을 인식하여 자산 유실을 방지하고, 자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 선진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수년에 걸쳐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고 그 파장이 크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05
NASC

공지사항

김 상 노 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영국,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 위탁운영기관 | KICPA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한국공인회계사회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2년 6월 30일 발행